

전문체육위원회 규정

제 정 2016. 02. 22.

개 정 2024. 01. 23.

제 1 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장애인양궁협회(이하 '협회'이라 함) 정관 제38조 ①항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며,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개정 '24. 01. 23.>

제 2 조 (목적) 위원회는 장애인양궁 종목의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선수 양성·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1. 위원회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선발과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1. 국가대표선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선수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라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장애유형별 선수선발 시에는 해당 장애유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제 5 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4. 01. 23.>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4. 01. 23.>

제 6 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회 미구성 시 국가대표지도자는 회장 내부결재로 확정할 수 있으며, 추후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4. 01. 23.〉

제 7 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4. 01. 23.〉

~~**제 7 조 (위원회 구성 시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동일 대학 출신자 또는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장애인양공 종목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삭제 '24. 01. 23.〉~~

제 8 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사임한다.

제 9 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4. 01. 23.〉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제8조 위원들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6.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24. 0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